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과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조인력 결원 및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아울러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장애·질환 등에 따른 개별지원 필요성, 이동거리, 숙박 여부 및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4항).
나. 안전요원 우선 배치, 기타보조인력 대체 및 결원 발생 시 추가 안전대책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다. 교육감의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대체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의 법정 안전검사·점검 결과 확인을 지원하고, 통합 안전점검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② 보조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치할 경우,”를 “배치하는 경우”로, “이상 배치”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참여 학생의 연령 및 인원, 장애·질환 등에 따른 개별지원 필요성, 이동거리, 활동 유형 및 위험도, 숙박 여부와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 인원과 방법을 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타보조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학교장은 보조인력의 불참 또는 중도 이탈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의 배치, 활동 내용의 조정 등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 연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전 안전점검)”을 “(사전 안전점검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확인 방법 안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의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이행 여부
2.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법정 검사·점검 이행 여부
3. 체험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점검 이행 여부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사항을 기준으로 통합 안전점검표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학교장이 수립하는 현장체험학습 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생략)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보조인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또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보조인력----------.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④ ---------- 배치하는 경우 ----------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참여학생의 연령 및 인원, 장애·질환 등에 따른 개별지원 필요성, 이동거리, 활동 유형 및 위험도, 숙박 여부와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 인원과 방법을 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안전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타보조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⑦ 학교장은 보조인력의 불참 또는 중도 이탈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의 배치, 활동 내용의 조정 등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⑧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보조인력 인력자원 구성·운영) (생 략)	제9조(보조인력 인력자원 구성·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배치와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 연계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전 안전점검) (생 략)	제12조(사전 안전점검 및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참고

	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확인 방법 안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세버스 등 교통수단의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이행 여부 2.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법정 검사·점검 이행 여부 3. 체험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점검 이행 여부
<신 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사항을 기준으로 통합안전점검표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

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7조(안전요원등의 지정 등), 제12조(사전 안전점검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노 종 용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5. 9. 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822호, 2025. 9. 22.,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044-320-2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2., 2025. 9. 22.>

1. 삭제<2021.4.12.>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포함한다.
7. “안전요원”이란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8. “기타보조인력”이란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9.22.>

제4조(지역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4.12., 2025.9.22.>

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5. 학생안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7.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8.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원 대상 민사상·형사상 피소 시 대응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

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4.12., 2025.9.22.>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4.12.>

[제목개정 2021.4.12.]

③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9.22.>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9.22.>

② 학교장은 교원에게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4.12., 2025.9.22.>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1.4.12., 2025.9.22.>

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4.12.>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4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5.9.22.>

② ② 보조인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또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5.9.22.>

③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4.12., 2025.9.22.>

1.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안전요원 배치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5.9.22.>

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요령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8조(보조인력의 임무)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9.22.>

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2.]

제9조(보조인력 인력자원 구성·운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보조인력 인력자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2.]

제10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9.22.>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개정 2025.9.22.>

③ 삭제<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12조(사전 안전점검)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9.22.>

[전문개정 2021.4.12.]

제13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9.22.>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개정 2025.9.22.>

[본조신설 2021.4.12.]

제14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학여행지원단은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학교 대상 컨설팅 지원, 대규모 수학여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4.12.]

부칙 <제2822호,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